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15

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 송옥주・이병진・황명선

한정애 • 이수진 • 박해철

전용기 • 이해민 • 한민수

박 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, 연령, 종교, 사회적신분, 재산, 장애,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에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3항 중 "인종"을 "국적, 인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3조(보육 이념) ①・② (생	제3조(보육 이념) ①・② (현행과	
략)	같음)	
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	③	
의 성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		
분, 재산, 장애, <u>인종</u> 및 출생지	<u>국적, 인종</u>	
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		
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		
어야 한다.		